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 안 자 : 구교강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안 제6조제4항 신설)

-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규칙을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